

#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이 동 현 위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-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으로 인권탐방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‘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’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.
- 날로 인권이 증대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로 인해 인권이 부각되고 있는 시대 흐름을 감안할 때 인권 탐방에 대한 내실 있는 계획을 통해 다음세대와 현세대가 인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.

- 주요 내용으로는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7조 2항 6호에 ‘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 계획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.
  
-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  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